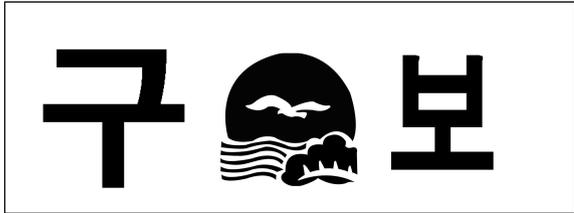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589 호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3-43호(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46호(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47호(2013년 4월 부과분 및 2월 독촉분 지방 소득세
공시송달 공고) 18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48호(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정수)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1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53호(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 입법예고) 23

회 보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36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진흥실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3-4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5. 20.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로25번길 9 외 8건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032)760-7825~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05.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붙임2. 도로명 주소 별도 열람

순번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 사유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87-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로25번길 9 (운서동)	신축	2010.10.19	운서2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7-13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86번길 151-26 (운북동)	신축	2009.02.24	백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7-120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86번길 151-24 (운북동)	신축	2009.02.24	백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7-122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86번길 151-19 (운북동)	신축	2009.02.24	백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7-123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86번길 151-17 (운북동)	신축	2009.02.24	백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7-124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86번길 151-25 (운북동)	신축	2009.02.24	백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7-125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86번길 151-23 (운북동)	신축	2009.02.24	백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57-126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186번길 151-21 (운북동)	신축	2009.02.24	백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883,884	인천광역시 중구 소무의로 42-6 (무의 동)	신축	2009.02.24	츄츄는 무희의 웃자락처럼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섬이름 반영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46호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한글맞춤법 기준에 따른 정비
- 2012년도 제21회 구민상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 건의사항 반영
-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

2. 주요내용

- 구민상 수상부문 세분화 : 5개분야 ⇨ 6개분야(안 제2조)

	개정 전	개정 후
수상부문	사회봉사상	사회봉사상
	효행상	효행상
	산업진흥상	산업진흥상
	체육진흥상	체육진흥상
	교육문화예술상	문화예술상 교육공로상

- 수상대상자 거주지 제한 조건 완화(안 제3조)
 - 개정前 : 산업진흥상, 교육문화예술상 2분야에 국한하여 관내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개정後 :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안 제11조)
 -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 제공 규정 삭제
-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당해연도	해당 연도
~하는 자	~하는 사람	~인	~명
호선한다	서로 뽑는다	각호	각 호
같음하여	대신하여	~준하여	~따라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총무팀)
- ▶ 전화 : 032)760-7152 [fax 032)760-7159]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

- 1. 사회봉사상
- 2. 효행상
- 3. 산업진흥상
- 4. 체육진흥상
- 5. 문화예술상
- 6. 교육공로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 1. 사회봉사상

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

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 2. 호행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 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
- 4. 체육진흥상
 - 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 나. 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
- 5. 문화예술상: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
- 6. 교육공로상: 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장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공적조서 1부
- 2. 공적요약서 1부
- 3. 이력서 1부
- 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 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 후 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 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

제10조(이중수상 금지) 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상할 수 없다.

제11조(상패) 구민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15조(수상자의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

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
2. 사망한 때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제5조 관련)

1. 인적사항		사 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공 적 개 요				
<p>위 사람을 20 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추천인 : ○ ○ ○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p>				
<p>구 비 서 류</p> <p>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p>				

[별지 제2호서식]

구민상 수상자 대장(제14조 관련)

연 번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시상부문	시상일자	비 고
						증명사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u>	<u>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기 위한 <u>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수상부문) <u>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총 수상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봉사상 2. 효 행 상 3. 산업진흥상 4. 체육진흥상 5. <u>교육문화예술상</u>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 〈신 설〉</p> <p>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u>인천광역시중구 구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단, 산업진흥상, 교육문화예술상은 관내에서 활동실적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u>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수상부문)</p> <p>① <u>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봉사상 2. 효 행 상 3. 산업진흥상 4. 체육진흥상 5. <u>문화예술상</u> 6. <u>교육공로상</u> <p>② <u>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u>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사회봉사상</p> <p>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자</p> <p>나. 자선사업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u>남다른</u> 공헌을 한 자</p> <p>2. 효행상 : <u>충효정신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u></p> <p>3. 산업진흥상 :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등 지역산업 진흥에 공헌한 자</p> <p>4. 체육진흥상</p> <p>가.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서 단체 또는 개인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자</p> <p>나. 구민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자</p> <p>5. <u>교육문화예술상</u> : <u>교육, 문화, 예술분야 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세웠거나 기여한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수상후보자)</p> <p>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u>각급기관 또는 단체장에게</u> 수상후보자가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p>	<p>1. 사회봉사상</p> <p>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p> <p>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u>현저한</u> 공헌을 한 사람</p> <p>2. 효행상 : <u>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u></p> <p>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p> <p>4. 체육진흥상</p> <p>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p> <p>나. 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p> <p>5. <u>문화예술상</u>: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p> <p>6. <u>교육공로상</u>: <u>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u></p> <p>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p> <p>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u>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u>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u>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u>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공적조서 1통 3.공적요약서 1통 4.이력서 1통 5.공적증빙서류 1통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④위원은 <u>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u> ⑤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p>	<p>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u>제4조에 따라</u>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u>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서로 뽑는다.</u> ④ 위원회 위원은 <u>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u> ⑤ 위원회는 <u>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장의 직무)</p> <p>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은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중에서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을 위촉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회의)</p> <p>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제9조(시상)</p> <p>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0조(이중수상 금지)</p> <p>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상할 수 없다.</p> <p>제11조(부상)</p> <p>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장의 직무)</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회의)</p> <p>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시상)</p> <p>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p> <p>제10조(이중수상 금지)</p> <p>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상할 수 없다.</p> <p>제11조(상패)</p> <p>구민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u>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u></p> <p>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와 서기 각 1인</u>을 둔다. ②간사는 <u>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u></p> <p>제14조(기록보존) <u>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u></p> <p>제15조(수상자의 특전) <u>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u> 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p> <p>제16조(실비변상) <u>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u>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u></p> <p>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와 서기 각 1명</u>을 둔다. ② 간사는 <u>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p> <p>제14조(기록보존) <u>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u></p> <p>제15조(수상자의 예우) <u>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u> 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 2. 사망한 때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u>그밖에</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p> <p>제16조(수당 등) <u>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단·과·소·동)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47호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 명 : 노명래 외 47명
주소또는거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04 (신흥동1가)

서류의 명칭 : 2013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2013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13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교부 불능분
 2013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교부 불능분

위의 서류를 2013. 4. 30까지 귀하(귀사)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사업소 불명 등으로 교부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2013년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2월 부과분 독촉고지서)를 우리 구 세무과에서 교부받아 **2013년 5월 31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4월 부과분 및 2013년 2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13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2013. 2월 부과분, 2013.4월 독촉분 지방소득세(소득분)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연번	구분	세목	납세번호	납세자명	과세물건	발송지	세액합계
1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양도세분)	140002-2013-04-2-540-00078	노명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인천중구동 162-4 로얄하이츠빌라 202)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항로 104 (신흥동1가)	965,170
2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양도세분)	140002-2013-04-2-585-00079	손귀식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인천중운남 840-16), 차액분	인천광역시 중구 신모로 74 (내동)	450,470
3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0003-2013-02-2-520-00006	(주)서일물산	2007년 귀속 법인세((주) 서일물산)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22, 607호 (항동7가, 한성빌딩)	1,318,210
4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2-2-520-00132	(주)대성티엘에스	2012년10월 귀속분((주) 대성티엘에스)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21번길 13, 203호 (항동7가, 유한빌딩)	20,100
5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20-00463	(주)선우티엔엘	2012년07월 귀속분((주) 선우티엔엘)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35 (항동7가)	21,040
6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20-00476	(주)대성티엘에스	2012년12월 귀속분((주) 대성티엘에스)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21번길 13, 203호 (항동7가, 유한빌딩)	20,100
7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20-000528	투라무역	2012년12월 귀속분(주식회사 투라무역)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94, 207호 (항동7가, 동부냉장내)	1,650
8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20-000533	웅진메이븐	2012년12월 귀속분(주식회사웅진메이븐)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21번길 13, 205호 2층 (항동7가, 유한빌딩)	3,120
9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30-00427	김영하	2012년11월 귀속분(미노래클럽) : 사업소득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15번길 21, 301호 (심정동, 소나무타운)	11,220
10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30-00051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011년10월 귀속분(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운리로 130 (송도동, 해양경찰청)	160,460
11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30-00051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012년12월 귀속분(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운리로 130 (송도동, 해양경찰청)	23,370
12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30-000608	강성에너지	2012년11월 귀속분(강성에너지 (주))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신모로27번길 57, 2층(중앙동2가, 창운빌딩)	117,720
13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40-00409	김현주	2012년12월 귀속분(트랜소닉) : 퇴직소득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남로 8, 401호 (용현동)	4,480
14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40-00410	김현주	2012년12월 귀속분(트랜소닉)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남로 8, 401호 (용현동)	4,450
15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40-000415	최성근	2012년07월 귀속분(에스엠모터스)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132동 901호 (신현동, 신현a-편한세상·하늘재아파트)	780
16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40-000467	(주)웃는해	2012년07월 귀속분(주식회사 웃는해) : 사업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47 (항동7가, 인천형식안전용부두동유로직스내)	88,770
17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40-000468	(주)웃는해	2012년07월 귀속분(주식회사 웃는해)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47 (항동7가, 인천형식안전용부두동유로직스내)	12,430
18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40-000495	(주)성빈실업	2012년07월 귀속분((주) 성빈실업)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8 (신흥동3가, 인천골드프라자 3층)	8,550
19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40-000565	(주)천지인지적률로벌	2012년07월 귀속분((주) 천지인지적률로벌)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에이동 402호 (신흥동3가, 정광씨빌리스)	316,250
20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85-000509	(사)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2012년11월 귀속분((사)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중구지회) : 기타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1	1,880
21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85-000586	(주)에이제이	2012년12월 귀속분((주)에이제이)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향로106번길 9 (옥련동)	41,090
22	2013.4월부과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40004-2013-04-2-585-000605	선우엔지니어링건설	2009년02월 귀속분(선우엔지니어링건설 (주)) : 근로소득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로174번길 8, 202 (경동)	326,910
23	2013.2월독촉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20-000130	강기정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5, 300호 (항동7가, 씨사이드빌리지)	662,670
24	2013.2월독촉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20-000134	원종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24 (항동7가)	15,267,520
25	2013.2월독촉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20-000148	여운상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7 (항동7가)	612,870
26	2013.2월독촉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20-000150	홍익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4동 113호 (항동7가, 비취맨션)	1,149,110

연번	구분	세목	납세번호	납세자명	과세물건	발송지	세액합계
27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30-000137	박봉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흥예문로 7, 814호 (중앙동3가,포트뷰오피스텔)	7,191,680
28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30-000183	WANG CHIOU YUE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신모로 73-1 (송학동3가)	11,573,700
29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30-000184	WANG CHIOU YUE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신모로 73-1 (송학동3가)	13,088,280
30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30-000185	WANG CHIOU YUE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신모로 73-1 (송학동3가)	20,740,100
31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40-000141	임정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30, 107동 1308호 (신흥동3가,신흥아이파크)	22,071,040
32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40-000152	윤성복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96, 2104호 (신흥동2가,누리타워)	515,320
33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40-000190	변유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36-4 (신흥동3가)	408,490
34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40-000191	유근상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10번길 70 (신흥동3가)	692,660
35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60-000139	KAPADZE TIMUR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 중 도원 7-1 주식회사인천유나이티드	16,114,360
36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60-000140	SANTANA FABIO JU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 중 도원 7-1 주식회사인천유나이티드	16,390,280
37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60-000153	SANTOS BARRETO R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 중 도원 7-1 주식회사인천유나이티드	609,290
38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60-000154	THOMAZOTTI PIERR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 중 도원 7-1 주식회사인천유나이티드	686,260
39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60-000157	ELIONAR NASCIMEN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 중 도원 7-1 주식회사인천유나이티드	3,246,690
40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60-000159	GIARETTA DIEG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 중 도원 7-1 주식회사인천유나이티드	4,640,190
41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60-000160	BEKRIC SAMIR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 중 도원 7-1 주식회사인천유나이티드	5,164,540
42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70-000135	최정안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을목로 18-12, 402호 (을목동,동남5차빌라)	11,117,600
43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585-000156	이승욱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 8-18, 204호 (경동)	2,084,220
44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0001-2013-02-2-600-000187	박인숙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수정신고,차액분)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8번길 13-16 (북성동1가)	662,230
45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양도세분)	140002-2013-02-2-520-000016	임관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인천중송월동3 5-10)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광원서로37번길 4-5, (송월동3가)	51,640
46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양도세분)	140002-2013-02-2-520-000017	박복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인천중항동 7 58-66)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5번길 40, 9동 201호 (항동7가,다흥탐스빌)	3,339,500
47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양도세분)	140002-2013-02-2-530-000021	박화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인천중중앙동 4 2-9)	인천광역시 남구 송림로 194, 101동 1503호 (도화동,신동아파빌리에아파트)	5,106,600
48	2013.2월 특속분	지방소득세(양도세분)	140002-2013-02-2-600-000026	양영석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인천남동간석 37-70)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25 (북성동2가)	1,903,920
						합계	168,968,540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0-428호(2010.05.24)로 환지처분 된 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부족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미 징수자에게 압류 예고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공 고 명 : 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3.05.15 ~ 2013.05.30(15일간)
- 3. 게시장소 : 시군구보, 게시관 및 홈페이지
- 4. 공고대상자 : 별첨 내역 참조
- 5. 관련법규 :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청산금), 제68조(청산금)
 나. 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 제42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다. 국세 징수법 제24조(압류)
 라.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운서지구 환지청산금 미징수대상자 공시송달 대상조사

연번	청산금징수대상토지					이름	납부자주소	청산금징수액(원)	과태료	우편물 수령여부	비고
	동	지목	종전지번	지목	환지도지						
1	운서동	전대	258-1 332-1	대	2929-5	임복순	RECKLINGHAUSEN, GERMANY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186	59,948,500	연12%별도 발생	반송	주소불명
2	운서동	전	327-0	대	2931-13	조성문	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88	98,252,000	연12%별도 발생	반송	폐문부재
3	운서동	답	392-5	대	2890-6	정갑래	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신) 인천광역시 중구 갯개로	68,127,650	연12%별도 발생	반송	이사불명
4	운서동	전	339-5	대	2904-3	웅진군 영종면 운서1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7,900	연12%별도 발생	반송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53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안

□ 제 안 이 유

- 차이나타운과 근대개항역사의 무대인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서 관광·교육·문화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제 명: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화체험교실의 정의와 구성(안 제1·2장)
- 이용료와 감면 및 반환(안 제3장)
-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안 제4장)
 - 1)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은 3년(재위탁 가능)
 - 2) 시설관리공단에 우선하여 위탁

○ 제 명: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운영 규칙

- 문화체험교실 강사의 위촉과 평가(안 제2조, 제4조)
 - 1) 중구청장이 위촉과 평가를 원칙으로 함
 - 2) 위탁 운영한 경우 수탁자가 가능하도록 명시
- 강사의 자격기준(안 제3조)
- 강사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안 제5조, 제6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13. 5.

제 출 자 : 관광진흥실장

1. 제 안 이 유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문화체험교실의 정의와 구성(안 제1·2장)

- 1)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중국어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한 중국어 문화체험교실
- 2) 근대역사 문화체험과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개항장 문화체험교실

나. 이용료와 감면 및 반환(안 제3장)

프로그램명	금 액	비 고
어린이문화체험교실	1명마다 10,000원	
토요문화체험교실	1명마다 5,000원	
어학강좌	- 초등학생반 60,000원(분기별) - 기초·초급·중급반 45,000원(분기별) - 고급반 60,000원(분기별)	※신규 강좌를 개설할 때 수준별 30,000~60,000원 으로 책정 (분기별)
문화강좌	- 중국문화반 30,000원(분기별) - 중국악기반 60,000원(분기별)	

다.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안 제4장)

- 1)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은 3년(재위탁 가능)
- 2) 시설관리공단에 우선하여 위탁

3. 참 고 사 항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어 문화체험교실"이란 중국어권 문화체험과 중국어 학습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차이나타운 지역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개항장 문화체험교실"이란 근대역사 문화체험과 근대역사 교육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소재 개항장문화지구 지역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화체험교실"이란 중국어 문화체험교실 및 개항장 문화체험교실을 말한다.
4. "어학·문화강좌"란 문화체험교실 중 언어 또는 문화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장 설치와 운영계획

제3조(설치)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알리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이하 "문화체험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험교실은 한중문화관 등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구 소재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계획) 구청장은 해마다 문화체험교실의 종류 및 운영방법 등을 포함한 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장 이용료

제5조(납부) ① 문화체험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참여 신청과 함께 별표 1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6조(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별표 2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1. 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 2.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 3. 어학·문화강좌를 중복하여 수강하는 사람
- 4. 한어수평고시(HSK)에서 해당 반 급수에 합격한 사람

제7조(반환) ① 구청장은 문화체험교실의 이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 1. 운영자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이용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 2.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서면으로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 3. 어학·문화강좌의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 전액(다만, 이용예정일 이후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 그 예정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이용료를 말한다) 반환
- 4.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전액 반환

제4장 관리 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체험교실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험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1. 외부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
- 2.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 1. 문화체험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2. 그 밖에 위탁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처리 실적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문화체험교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2.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한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 3. 프로그램이 끝난 후 1개월 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위탁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손실 및 손해에 대비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5.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재위탁 및 대리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지사유 및 일자를 그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및 관련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 요구,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준용) 문화체험교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수탁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1항의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및 운영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의 “중국어마을(프로그램 운영을 말한다)”을 “문화체험교실 운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문화체험교실 이용료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명	금 액	비 고
어린이문화체험교실	1명마다 10,000원	
토요문화체험교실	1명마다 5,000원	
어학강좌	- 초등학생반 60,000원(분기별) - 기초·초급·중급반 45,000원(분기별) - 고급반 60,000원(분기별)	※ 신규 강좌를 개설할 때 수준별 30,000~60,000원 으로 책정(분기별)
문화강좌	- 중국문화반 30,000원(분기별) - 중국악기반 60,000원(분기별)	

[별표 2]

문화체험교실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6조제2항 관련)

프로그램명	금 액	비 고
어린이문화체험교실	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 50퍼센트 감경	
토요문화체험교실	구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50퍼센트 감경	
어학·문화강좌	- 구민 50퍼센트 감경 - 중복 수강 시 15,000원 감경(분기별) - 한어수평고시(HSK)에서 해당 반 급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분기의 수강료 전액 면제	※ 구민은 중복 수강할 때 감경 제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운영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13. 5.

제 출 자 : 관광진흥실장

1. 제 안 이 유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문화체험교실 강사들의 자격기준과 강사수당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문화체험교실 강사의 위촉과 평가(안 제2조, 제4조)

- 1) 중구청장이 위촉과 평가를 원칙으로 함
- 2) 위탁 운영한 경우 수탁자가 가능하도록 명시

나. 강사의 자격기준(안 제3조)

구 분	자 격 기 준
체험강사	-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강사	- 중국 원어민 대학(원)생 - 관련 학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어학·문화강사	-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학과 전공자 -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강사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안 제5조, 제6조)

구 분	체험강사	보조강사	기타 전문강사
시간당	25,000 (15,000)	10,000 (5,000)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구 분	초등학생반	기초, 초급, 중급	중국악기	고급	중국문화
시간당	30,000	35,000		40,000	

3. 참 고 사 항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위촉) 문화체험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운영 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강사의 평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수시로 평가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제2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활동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6조(강사수당 지급시기) 강사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되,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한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이 규칙에 따른 강사로 보며, 그 위촉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문화체험교실 강사 자격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체험강사	-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강사	- 중국 원어민 대학(원)생 - 관련 학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
어학·문화강사	-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학과 전공자 -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문화체험교실 강사수당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체험강사	보조강사	기타 전문강사
시간당	25,000 (15,000)	10,000 (5,000)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 지급기준은

- ① 1~6시간: 시간당 기준금액 적용
- ② 1일 6시간 초과 시: 추가 시간당()금액 적용

[별표 3]

어학·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기준(제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초등학생반	기초, 초급, 중급	중국악기	고급	중국문화
시간당	30,000	35,000		40,000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회 보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3.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요골자

- 계 획 명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310,247㎡
 - 변경 : 234,996㎡(감75,251㎡ 6구역포함)
- 계획인구
 - 기정 : 10,320인 (3,880세대)
 - 변경 : 5,622인(2,324세대)
- 목표연도
 - 기정 : 2013년
 - 변경 : 2018년
- 사업방식

구분	구역명	사업시행방식		비고
		기정	변경	
재 정 비 촉 진 지 구	합 계	-	-	
	재정비촉진 1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 2구역		준치관리	
	재정비촉진 3구역		준치관리	
	재정비촉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 5구역		준치관리	
	재정비촉진 6구역		재정비촉진지구제외	해제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공람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 공람기간 : 2013.05.13 ~ 2013.05.28

※ 공람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할 수 없습니다.

○ 의견제출 : 상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전화 032-440-4453, 4455)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전화 032-760-7657)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개발과(전화 032-770-667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